

울산지방법원 2023. 8. 24 선고 2023나11156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3. 7. 6.

판 결 선 고 2023. 8. 24.

제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. 1. 17. 선고 2020가단7834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,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3. 2.부터 2023. 8. 24.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,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1)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D은 2020. 2. 17.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잔액 3,700만 원을 2022. 3. 1.까지 완납하기로 약정(구체적으로, 2020. 2. 17.까지 200만 원, 이후 매달 25일에 50만 원~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)하였고, 피고는 C과 함께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,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D이 원고에게 위 채무를 매달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증이었는데 D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, D이 원고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,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금 3,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완납기일 다음 날인 2022. 3. 2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. 8. 24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(원고는,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, 피고에 대한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0. 7. 16.은 완납기일이 도래하기 이전이므로, 지연손해금은 위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)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

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,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주연, 판사 유진현, 판사 이정목

1)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 2020하단5325, 2020하면5325 파산절차 진행 결과를 보기 위해 여전히 1심 소송 계속 중이다.